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용자 교육의 내용·시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신설로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육내용)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내용, 산업재해예방, 보험제도, 각종 행정 신고사항
- (교육시간) 과목 수(6과목)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설정

나. 사용자 교육의 방법 :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다. 사용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교육 실시기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리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앞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용자 교육의 내용·시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자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신청, 관련 보험제도, 체류 및 귀국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계약, 퇴직금, 인사 및 노무관리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건강증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사항 및 고용변동 신고 등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 교육의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자 교육은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삽입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의2를 각각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로 한다.

제16조의2 앞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사용자 교육의 내용 · 시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자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신청, 관련 보험제도, 체류 및 귀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2. 근로계약, 퇴직금, 인사 및 노무관리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u> <u>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건강증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u>4.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사항 및 고용변동 신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u> <u>5.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u>② 사용자 교육의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u> <u>③ 사용자 교육은 집체교육, 인</u>

	<u>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u>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12조 ~ 제13조 (생략)</u>	<u>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u>
<u>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u> <u><신설></u>	<u><삭제></u> <u>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u>
<u>제14조 ~ 제15조 (생략)</u>	<u>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u>
<u>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u> <u><신설></u>	<u><삭제></u> <u>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u>
<u>제15조의2 · 제16조 (생략)</u>	<u>제16조의2 · 제17조 (현행 제15조의2 및 제16조와 같음)</u>
<u>제5장 보칙</u> <u><신설></u>	<u><삭제></u> <u>제5장 보칙</u>
<u>제17조 ~ 제20조 (생략)</u>	<u>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u>